

● 김해시 고시 제2022-98호

김해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김해시 고시 제2014-156호(2014.8.28.)로 변경고시된 김해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변경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8일

김 해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변경)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변경)

- 관리기관 : 김해시(김해시 김해대로 2401)
- 산업단지 위치

구 분	소 재 지	면 적 (㎡)
기 정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산165-1번지 일원	657,839
변 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산165-2번지 일원	849,675

나. 조성목적(변경)

기정 김해시에 일본기업인 구로다전기(주)와 국내기업인 이케이인더스트리(주)가 합작 법인인 (주)코테크엘코리아를 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 첨단 업종의 유치로 고용창출 및 국내 기술이전, 외국인 투자지역의 조세 등의 특혜와 생산제품수출을 위한 양호한 교통기반시설 구축(부산신항, 김해국제공항, 진영 KTX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변경 김해시의 양호한 교통여건(부산신항, 김해국제공항, KTX 진영역, 부산순환고속도로 등)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단지의 주변지역에 중소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친환경, 첨단업종을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물류시설 도입을 통한 생산공정 연계로 산업경쟁력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다. 추진경위(변경)

- '12. 5.16 : MOU체결(김해시, 경상남도, 구로다전기(주), EK인더스트리(주))
- '12. 11. 1 : 투자의향서 제출
- '13. 7. 1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13. 7. 3 : 주민 공고·열람

- '13. 7. 8 : 합동설명회 개최(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 초안)
- '13. 9.17 : 관련기관(부서) 협의완료
- '13. 10.10 : 경남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13. 10.31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김해시고시 제2013-199호)
- '13. 11. 7 : 관리기본계획 고시(김해시고시 제2013-205호)
- '14. 3.14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신청서 접수
- '14. 3.17 : 산업단지계획(변경) 주민 공고·열람
- '14. 3.24 : 합동설명회 개최(산업단지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초안)
- '14. 6. 2 : 국토교통부 진입도로 사업타당성 검증(국고신청)
- '14. 6.18 : 김해시 경관위원회 심의 완료
- '14. 7. 9 : 산업단지계획(변경) 관련기관(부서)협의 완료
- '14. 7.25 : 경남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14. 8.14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고시 제2014-149호)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김해시고시 제2014-150호)
- '14. 8.28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김해시고시 제2014-156호)
- '15. 4. 2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고시 제2015-57호)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김해시고시 제2015-58호)
- '16. 12.29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고시 제2016-339호)-기간연장
- '17. 8.10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17-216호) -구역확장 및 기간변경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17-217호)
- '17. 8.17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정정고시(김해시고시 제2017-223호)
- '18. 5. 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김해시고시 제2018-101호)-경계측량
- '18. 5.10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김해시고시 제2018-108호)
- '18. 12.27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김해시고시 제2018-335호)-기간연장
- '19. 12.27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김해시고시 제2019-350호)-기간연장
- '20. 3. 6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김해시고시 제2020-64호)-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 '20. 4. 3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20-93호)
- '20. 7.24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김해시고시 제2020-221호)-기간연장
- '21. 9.24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김해시고시 제2021-344호)-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 변경 등
- '21. 11.12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김해시고시 제2021-395호) -구역확장 및 기간변경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21-396호)-시행자 및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라. 분양현황 및 계획(변경)

기정)

구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소계	분양	미분양			
				조성	조성중		
합계	657,839	337,094	-	-	337,094	2013~2016 (주)에코테크웰코리아, 이케이인더스트리(주)	
산업시설	337,094	337,094	-	-	337,094		
지원시설	3,137	3,137	-	-	3,137		
공공주차장	7,936	7,936	-	-	7,936		
시설도로의	291,575	-	-	-	-		
완충녹지	18,097	-	-	-	-		

변경)

구분	총면적(㎡)	분양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미분양			계		
			조성	조성중	소계			
합계	835,050	320,945	-	514,105	514,105	835,050	2013~2023 코리아신타(주)외 2개사	
산업시설구역	467,686	320,945	-	146,741	146,741	467,686		
지원시설구역	24,159	-	-	24,159	24,159	24,159		
공공시설구역	298,468	-	-	298,468	298,468	298,468		
녹지구역	44,737	-	-	44,737	44,737	44,737		

※산업단지계획 상의 주거시설용지(14,625㎡)는 관리대상 면적에서 제외

마. 입주계획(신설)

구분	업체수		면적(㎡)		비고
	산업시설	지원시설	산업시설	지원시설	
합계	13	18	467,686	24,159	

※입주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바. 입지여건(변경)

기정)

시설명	내용	시행기관
도로	○ 남해고속도로(진례IC) ○ 국도 14호선(동서대로) ○ 구국도 14호선(김해대로) ○ 국도 58호선(김해대로, 생림대로)	-
항공	○ 김해공항(25km 내외)	-
항만	○ 부산신항(완공기준)	-
전력	○ 한국전력공사 128,141MWh/년 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용수	○ 수도공급시설 -공급량 : 3,382.8㎡/일	김해시(상하수도 사업본부)
오수	○ 오수처리장 운영 -처리용량 : 239.8㎡/일	사업시행자
폐수	○ 폐기물처리장 운영 -처리용량 : 27.8만톤(매립기한 10년, 365일 기준)	사업시행자
통신	○ 일반전화 등 통신시설 공급	(주)KT
에너지	○ 에너지사용계획서 준수	-

변경)

시설명	내용	확충계획		
		일정	규모	시행기관
도로	○ 남해고속도로(진례IC) ○ 국도 14호선(동서대로) ○ 구국도 14호선(김해대로) ○ 국도 58호선(김해대로, 생림대로)	-	-	-
항공	○ 김해공항(25km 내외)	-	-	-
항만	○ 부산신항만 이용	-	-	-
철도	○ 진례역(5km), 진영역(4km) 이용			
전력	○ 한국전력공사 공급계획	-	-	한국전력공사
용수	○ 생활용수 666.9㎡/일 ○ 공업용수 1,097.5㎡/일	-	-	김해시(상하수도사업본부)
오수	○ 자체 오수처리장 인입처리 후 방류계획 생활오수 587.20㎡/일	-	-	사업시행자
폐기물	○ 폐기물처리장 운영 237,782.9톤/년(365일 기준)	-	-	사업시행자
통신	○ (주)KT 일반전화 등 통신시설 공급	-	-	(주)KT
에너지	○ 에너지사용계획서 준수	-	-	경남에너지(주)

2. 관리기본방향(변경)

기정)

- 관리기관 : 김해시(사업시행자 : (주)에코테크웰코리아, 이케이인더스트리(주))
- 합리적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적극적인 경영활동 지원 전개
- 일본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외국인전용 산업단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기회 확대 마련

변경)

- 친환경, 첨단업종을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물류시설 도입을 통한 생산공정 연계로 산업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
- 합리적 업종배치, 입주업체에 적극적인 경영활동 지원 전개
-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운영

3. 관리기본계획(변경)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변경)

1) 용도별 구역면적(변경)

구 분	합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적(㎡)	657,839	835,050	337,094	467,686	3,137	24,159	317,608	298,468	36,628	44,737
구성비(%)	100.0	100.0	51.2	56.0	0.5	2.9	48.3	35.7	5.6	5.4

※ 산업단지계획 상의 주거시설용지(14,625㎡)는 관리대상 면적에서 제외

※ 세부시설내역

- 산업시설구역 : 467,686㎡(산업시설용지)
- 지원시설구역 : 24,159㎡(지원시설용지)
- 공공시설구역 : 298,468㎡(도로 250,044㎡, 주차장 12,824㎡, 저류지 15,967㎡, 우수처리장 1,822㎡, 배수지 2,336㎡, 가압장 1,634㎡, 폐기물처리장 13,841㎡)
- 녹 지 구 역 : 44,737㎡(공원 23,951㎡, 녹지 20,786㎡)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가) 산업시설구역(변경)

기정)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 (2) 산집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업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관련시설
- (3) 산업시설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율은 300%이하로 적용
-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로서 세부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변경)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입주기업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 및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시설(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허용)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에 한함)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변경)

기정)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로서 세부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2) 지원시설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200%이하로 적용

변경)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로서 세부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변경)

기정)

-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
- (2)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외의 공공·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로서 세부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변경)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른 공공시설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및 부대시설

라) 녹지구역(신설)

-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용도별구역 평면도: 별첨 1 (변경)

나. 입주관리계획(변경)

1) 입주대상업종(변경)

가) 산업시설구역(변경)

- 기정)** (1) 공장시설용도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C22, C24, C25, C26, C27, C28, C29, C30, D35 업종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C28 : 전기장비 제조업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변경) (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만 적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임대업(L6811) 적용

나) 지원시설구역(변경없음)

(1)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함

2) 입주자격(변경)

가) 산업시설구역(변경)

기정)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김해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변경)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본 산업단지 입주대상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2)의 대양에너지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건축물 지붕옥상 및 외벽 설치에 한함)
- (3) 「산업집적법」 제38조2제1항제2호의 부동산 임대업(L6811)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 함

나) 지원시설구역(변경)

기정)

(1)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함

변경)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 (2)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 (1)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거한 입주 업체
 - (2)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성장유망기업체
 - (3)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저공해업종 영위 기업체
 - (4) 수출 기여도, 신기술 보유,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체
- 관리기관은 위 항목을 포함한 입주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4) 입주제한(변경)

기정)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2) 취수장(탄섭 강변여과수)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 지역은 폐수배출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수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 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2조 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고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20세제곱미터이하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
-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 표면처리시설,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변경)

- (1)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2) 취수장(탄섭 강변여과수)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 지역은 폐수배출시설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수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고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

-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표면처리시설,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다.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1)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37,094	467,686	100.0	100.0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638	265,736	4.3	56.8		
C24. 1차 금속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31,869		9.4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0,332		9.0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98,094		29.1			
C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25,633		7.6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58,491		17.4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2,095		12.5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942		10.7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지역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201,950		-	43.2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업을 도입하기 위해 유치업종배치계획 수립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만 적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임대업(L6811) 적용

2) 배치기준(변경없음)

- 유치업종 및 시설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업종별 유치 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토, 효율적인 업종 배치계획 수립
- 업종별 규모 및 배치기준에 입각하여 업종별 집산화 유도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변경)

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변경)

1) 공공시설 설치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주차장	7,936	12,824	사업시행자 귀속
오수처리장	2,666	1,822	사업시행자 귀속
폐기물처리장	13,000	13,841	사업시행자 귀속

가) 주차장

- 「주차장법」 제12조의3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근로자와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

나) 폐기물처리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자격업자가 설치하며, 산업단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제외하고, 아울러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도 제외함

2) 지원시설 설치

구분	획지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원시설	1	18	3,137	24,159	사업시행자 귀속

3) 관리운영계획(변경)

기정)

- (1)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 우정, 소방, 통신, 금융·보험, 복리후생,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과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2)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
- (3) 지원시설 설치계획은 산집법에서 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금융·의료·교육·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입주가능한 시설

변경)

- (1)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하되 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규정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함
- (2)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
- (3) 지원시설 설치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마. 사후관리계획(변경)

-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

1)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시설용지 분할 기준(변경없음)

-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과 관련하여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

2) 세부관리계획(변경)

기정)

- 입주계약 업체의 산업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기본계획을 준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용지의 불법 전매, 장기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오수처리장을 통해 연계처리하며, 그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
- 폐수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
- 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조 및 사후관리 철저

변경)

가) 산업용지 관리

- (1) 입주계약 업체의 산업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기본계획을 준수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용지의 불법 전매, 장기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나) 환경관리

-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2)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다) 안전관리

- (1)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계 구축
- (2) 입주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반시설관리

- (1) 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조 및 사후관리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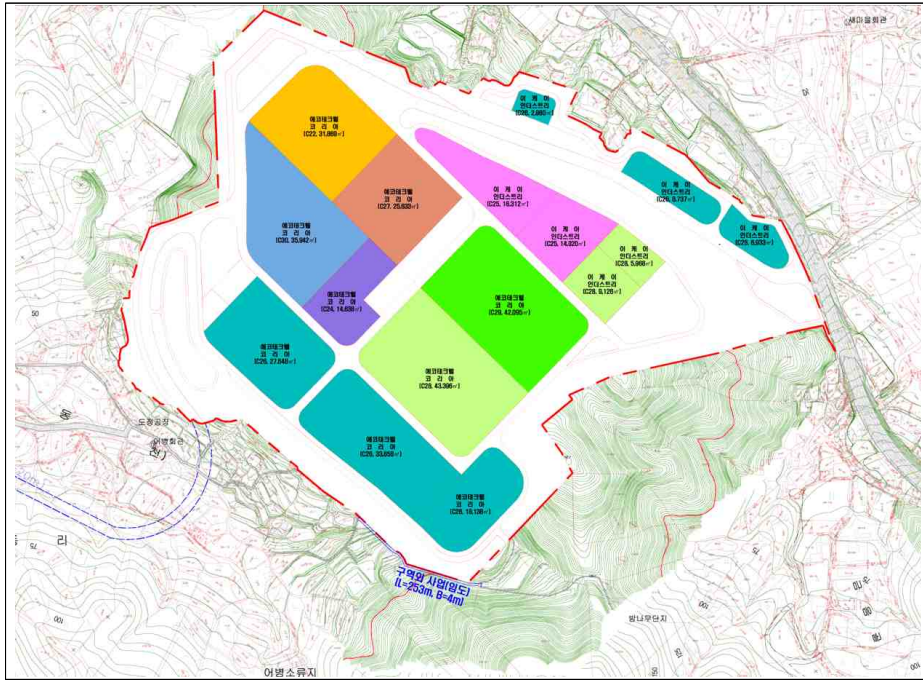
별

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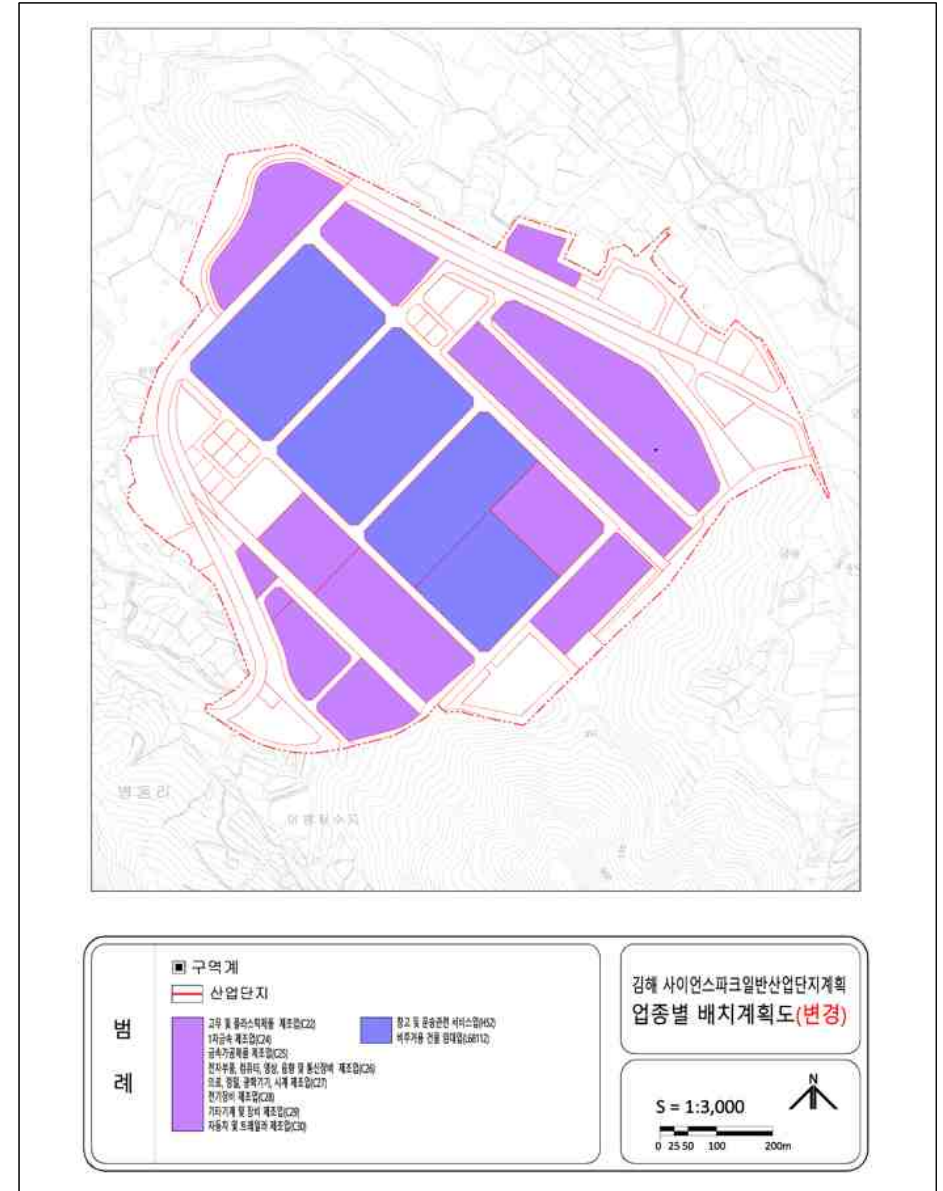
1. 용도별구역 평면도(변경)
2.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별첨 2]

업종별 배치계획도(기정)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 ※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는 전지역 가능
-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은 참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만 적용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제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임대업(L6811) 적용